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49호 2023. 8. 17.(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200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부분)준공인가 고시·1
- 사천시 고시 제2023-201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3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106호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47
- 사천시 공고 제2023-1122호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53
- 사천시 공고 제2023-1123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66
- 사천시 공고 제2023-1134호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97
- 사천시 공고 제2023-1137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110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고시 제2023-200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부분)준공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3-132호(2023. 6. 22.)로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사업이 (건축 부분)완료되어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분)준공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어촌·어항 지역을 연계하여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항 기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민소득 증진 및 어촌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14,967백만원(국비 10,477, 도비 1,347, 시비 3,143)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영북항 : 방파제 설치, 주차장 설치, 안전휀스 설치
 - 광포항 : 부잔교 확충
 - 산분령항 : 물양장 설치
 - 실안항 : 방파제 확충, 계류장 설치, 물양장 설치, 어구보관창고 설치(270.8㎡,준공)
 - 특화사업
 - 산분령항 : 다목적회관(199㎡, 준공)
 - S/W사업 :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마을 브랜드 개발 등
 - 사업의 구역 : 사천시 실안동 산4-1번지 영북항외 3개항(광포항, 산분령항, 실안항)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7. 사업예정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9월 30일
8. 사업의 효과
 -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배후 어촌 및 어항의 기능 향상
 - 잠재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어촌마을의 활력 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9. 시행계획 관련 서류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6)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실안동	1187-3	잡	1,694	800	사천시					
실안동	875-21	잡	1,579	400	해양수산부					
실안동	1187-2	도	1,642	45	국토교통부					
실안동	1096-41	잡	200	200	사천시					
실안동	1096-51	잡	550	550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고시 제2023-201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2012.09.13.)로 최초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하고 사천시 고시 제2022-282호(2022.12.22.)로 최종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변경) 승인·고시한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사 천 시 장

□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기타 제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 일원
- 면 적 : 248,498m²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2. 09. 13. ~ 2024. 06. 30.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

- 당초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C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변경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C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부동산업(L68-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L68112에 한함)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위탁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수탁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나. 주 소 :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답	대	도	전	구	임	비고
면 적(m ²)	248,498	5,127	7,765	293	89,937	4,399	140,977	
구성비(%)	100.0	2.1	3.1	0.1	36.2	1.8	56.7	
필지수(필지)	48	2	2	1	18	9	16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 계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계	국 토 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기 획 재정부
면 적(m ²)	248,498	248,498	-	-	-	-	-
구성비(%)	100.0	100.0	-	-	-	-	-
필지수(필지)	48	48	-	-	-	-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 고
총 계	248,498	100.0	
산업시설용지	158,006	63.6	
BL1	58,825	23.7	
BL2	74,848	30.1	
BL3	10,495	4.2	
BL4	13,838	5.6	
지원시설용지	4,205	1.7	
공공시설용지	86,287	34.7	
도로	34,479	13.9	
배수지	1,824	0.7	
저류지	5,850	2.4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0.6	
주차장1	2,070	0.8	
주차장2	1,000	0.4	
공원	3,943	1.6	
완충녹지	35,571	14.3	

사천 시 공 보

제849호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m²)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7	2,557 1(2,066)	38,754 1(34,479)	2	1,107 1(616)	17,671 1(13,396)	4	1,330 1(1,330)	20,352 1(20,352)	1	120 1(120)	731 1(731)
중로	기정	5	2,384 1(1,893)	37,791 1(33,516)	2	1,107 1(616)	17,671 1(13,396)	3	1,277 1(1,277)	20,120 1(20,120)	-	-	-
소로	기정	2	173 1(173)	963 1(963)	-	-	-	1	53 1(53)	232 1(232)	1	120 1(120)	731 1(731)

※ 1()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2	20~26.25	집산 도로	883 1(392)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1(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56	20	집산 도로	235 1(0)	소로1-2	중로1-4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0	16~19.25	집산 도로	501 1(501)	산업용지 BL1	완충녹지5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444 1(444)	산업용지 BL1	중로2-5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2	15~18.25	집산 도로	332 1(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57	8	국지 도로	53 1(53)	중로2-51	산업단지경 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기정	소로	3	157	6	국지 도로	120 1(120)	중로2-50	유수지⑨	일반 도로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28	주차장	사다리 217-1번지	1,000	-	1,00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 정	29	주차장	사다리 산26-10번지	2,070	-	2,070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4	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27-1번지	2,253	-	2,25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가	공원	소공원	사다리 217-1번지	1,690	-	1,690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35,571	-	35,571		
기 정	4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82-1	15,450	-	15,4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 정	49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4번지	4,963	-	4,963	"	
기 정	52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15,158	-	15,158	"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용수량

구 분	용수수요량(㎡/일)	비 고
계	2,087	계획용수량 : 2,087㎡/일 배수지용량 V=1,200㎡ (체류시간12시간)
축동일반산업단지	663	
대동일반산업단지	254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790	
탐리지역	380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수도공급설비	사다리 135-2번지	1,824	-	1,824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4) 방재시설

가) 우수지

○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9	우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5,850	-	5,8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1,550	-	1,5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 사업비 59,047백만원 중 사업시행자 자기자본금 300백만원, 타인
자본인 금융권대출 34,236백만원, 투자금 11,200백만원, 분양수익금
으로 13,311백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투자내역	투자액(천원)
2011년~2014년	용지비 및 보상비	-
	기타비	-
	소계	-
2015년	용지비 및 보상비	3,000,000
	공사비	1,155,000
	기타비용	300,000
	계	4,455,000
2016년	용지비 및 보상비	1,300,000
	공사비	4,169,000
	기타비용	500,000
	계	5,969,000
2017년	용지비 및 보상비	2,800,000
	공사비	-
	기타비용	200,000
	계	3,000,000
2018년	용지비 및 보상비	9,200,000
	공사비	-
	기타비용	1,700,000
	계	10,900,000
2019년	용지비 및 보상비	2,120,000
	공사비	600,000
	기타비용	1,300,000
	계	4,020,000
2020년	용지비 및 보상비	651,000
	공사비	-
	기타비용	1,063,000
	계	1,714,000
2021년~ 2024년06월30일	용지비 및 보상비	2,553,200
	공사비	20,216,000
	기타비용	6,219,800
	계	28,989,000
합 계		59,047,000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붙임)(변경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 당초

구 분	업 종	면 적(m ²)	구성비(%)
계	-	158,006	100.0
제 조 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36,128	2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13,838	8.8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10,495	6.6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58,299	36.8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52)	39,246	24.9

※ 산업단지내 전체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가능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위 치
산업시설용지	158,006	100.0	-
계	58,825	37.2	BL1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4,702	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50,817	32.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3,306	2.1	
계	74,848	47.4	BL2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5,422	3.4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3,227	8.4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56,199	35.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10,495	6.6	BL3
계	13,838	8.8	BL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5,159	3.3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8,679	5.5	

※ 산업시설용지 전체에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가능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 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은 허용함)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개발되는 토지

○ 사천시 무상귀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총 면 적	248,498	100.0	-
무상귀속면적	81,667	32.9	-
도로	34,479	13.9	사천시무상귀속
배수지	1,824	0.7	사천시무상귀속
저류지	5,850	2.4	사천시무상귀속
공원	3,943	1.6	사천시무상귀속
완충녹지	35,571	14.3	사천시무상귀속

○ 사업시행자 귀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사업자귀속면적	166,831	67.1	
산업시설용지	158,006	63.6	
지원시설용지	4,205	1.7	
주차장	3,070	1.2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0.6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248,498	-	248,498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248,498	100.0	
산업시설용지	158,006	63.6	
BL1	58,825	23.7	
BL2	74,848	30.1	
BL3	10,495	4.2	
BL4	13,838	5.6	
지원시설용지	4,205	1.7	
공공시설용지	86,287	34.7	
도로	34,479	13.9	
배수지	1,824	0.7	
저류지	5,850	2.4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0.6	
주차장1	2,070	0.8	
주차장2	1,000	0.4	
공원	3,943	1.6	
완충녹지	35,571	14.3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7	2,557 ¹(2,066)	38,754 ¹(34,479)	2	1,107 ¹(616)	17,671 ¹(13,396)	4	1,330 ¹(1,330)	20,352 ¹(20,352)	1	120 ¹(120)	731 ¹(731)
중로	기정	5	2,384 ¹(1,893)	37,791 ¹(33,516)	2	1,107 ¹(616)	17,671 ¹(13,396)	3	1,277 ¹(1,277)	20,120 ¹(20,120)	-	-	-
소로	기정	2	173 ¹(173)	963 ¹(963)	-	-	-	1	53 ¹(53)	232 ¹(232)	1	120 ¹(120)	731 ¹(731)

※ ¹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2	20~26.25	집산 도로	883 ¹ (392)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¹ (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56	20	집산 도로	235 ¹ (0)	소로1-2	중로1-4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0	16~19.25	집산 도로	501 ¹ (501)	산업용지 BL1	완충녹지5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444 ¹ (444)	산업용지 BL1	중로2-5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2	15~18.25	집산 도로	332 ¹ (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57	8	국지 도로	53 ¹ (53)	중로2-51	산업단지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기정	소로	3	157	6	국지 도로	120 ¹ (120)	중로2-50	유수지⑨	일반 도로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28	주차장	사다리 217-1번지	1,000	-	1,00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 정	29	주차장	사다리 산26-10번지	2,070	-	2,07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4	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27-1번지	2,253	-	2,25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가	공원	소공원	사다리 217-1번지	1,690	-	1,690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35,571	-	35,571		
기 정	4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82-1	15,450	-	15,4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 정	49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4번지	4,963	-	4,963	"	
기 정	52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15,158	-	15,158	"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8	수도공급설비	사다리 135-2번지	1,824	-	1,824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4) 방재시설

가) 우수지

○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9	우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5,850	-	5,8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1,550	-	1,5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I -1	12,294	12,294	I -1	I -1	1,000	1,000	주차장㉘		
-	I -2			I -2	I -2	2,070	2,070	주차장㉙		
-	I -3			I -3	I -3	1,550	1,550	폐수종말처리시설㉚		
-	I -4			I -4	I -4	5,850	5,850	저류시설㉛		
-	I -5			I -5	I -5	1,824	1,824	배수시설㉜		
-	II -BL1	158,006	158,006	II -BL1-1	II -BL1-1	11,978	11,978			
	II -BL1-2			II -BL1-2	4,651	4,651				
	II -BL1-3			II -BL1-3	6,204	6,204				
	II -BL1-4			II -BL1-4	16,413	16,413				
	II -BL1-5			II -BL1-5	19,579	19,579				
	II -BL2-1			II -BL2-1	10,311	52,893				
	II -BL2-2			II -BL2-2	9,195	6,556				
	II -BL2-3			II -BL2-3	8,581	2,708				
	II -BL2-4			II -BL2-4	4,369	1,653				
	II -BL2-5			II -BL2-5	3,153	1,653				
	II -BL2-6			II -BL2-6	2,269	2,714				
	II -BL2-7			II -BL2-7	2,336	6,671				
	II -BL2-8			II -BL2-8	3,201	-				
	II -BL2-9			II -BL2-9	4,599	-				
	II -BL2-10			II -BL2-10	7,620	-				
	II -BL2-11			II -BL2-11	8,705	-				
	II -BL2-12			II -BL2-12	10,509	-				
-	II -BL3					II -BL3-1	II -BL3-1	8,840	10,495	
						II -BL3-2	II -BL3-2	1,655	-	
-	II -BL4					II -BL4-1	II -BL4-1	2,745	2,512	
				II -BL4-2	II -BL4-2	2,280	2,647			
				II -BL4-3	II -BL4-3	8,813	8,679			
-	III	4,205	4,205	III	III	4,205	4,205			
-	IV -1-1	39,464	39,464	IV -1-1	IV -1-1	15,523	15,523	완충녹지㉞		
-	IV -1-2			IV -1-2	IV -1-2	4,963	4,963	완충녹지㉟		
-	IV -1-3			IV -1-3	IV -1-3	15,158	15,158	완충녹지㊱		
-	IV -2-1			IV -2-1	IV -2-1	2,253	2,253	공원㊲		
-	IV -2-2			IV -2-2	IV -2-2	1,690	1,690	공원㊳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당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1-1 II-BL1-2 II-BL1-3 II-BL1-4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1-5 II-BL2-1 II-BL2-2 II-BL2-11 II-BL2-1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2-3 II-BL2-4 II-BL2-5 II-BL2-6 II-BL2-7 II-BL2-8 II-BL2-9 II-BL2-10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시멘트,석회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1) • 콘크리트,레미콘및기타시멘트,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2) • 석면,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C23994)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3-1 II-BL3-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4-1 II-BL4-2 II-BL4-3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I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 -1 I -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1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업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업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3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331)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332) • 석면,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C23994)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4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 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은 허용함)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Ⅲ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1 I-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 어 내 용	비 고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42호선과 중로 1-43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1-43호선과 중로 2-50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1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소로 3-157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소공원④

가) 공원조성계획

부지총괄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사다리 산27-1번지	2,253	-	2,253	
기 정	보 행 로		308	-	308	
기 정	운동시설		66	-	66	
기 정	휴양시설		58	-	58	
기 정	녹 지		1,821	-	1,821	

시설총괄표

구분	시 설 명	면 적(m ²)	시설규모(m ²)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253	66	66	
기 정	보 행 로	308	-	-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운동시설	66	66	66	과고라1동
기 정	휴양시설	58	-	-	
기 정	녹 지	1,821	-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m ²)	위 치	시설규모(m ²)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2,253	사다리 산27-1번지	66	66	1	
보 행 로	1	308		-	-	-	
운동시설	2	66		66	66	1	1동
휴양시설	3	58		-	-	-	
녹 지	4	1,821		-	-	-	

소공원⑦

가) 공원조성계획

부지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사다리 217-1번지	1,690	-	1,690	
기 정	보 행 로		189	-	189	
기 정	운동시설		106	-	106	
기 정	휴양시설		36	-	36	
기 정	녹 지		1,359	-	1,359	

시설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²)	시설규모(m ²)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90	106	106	
기 정	보 행 로	189	-	-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운동시설	106	106	106	파고라1동
기 정	휴양시설	36	-	-	
기 정	녹 지	1,359	-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m ²)	위 치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1,690	사다리 217-1번지	106	106	1	
보행로	1	189		-	-	-	
운동시설	2	106		106	106	1	1동
휴양시설	3	36		-	-	-	
녹지	4	1,359		-	-	-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투자유치산단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작성되는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구성) 본 지침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에, 제3장은 지원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사천시 관련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최상층수에 해당하는 층의 바닥면적은 바로 아래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한다.)
7.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9.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6조 (건축물의 용도)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 제 내 용	비 고
산업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 C23(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114(태양에너지발전업-지붕및주차장에한함),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L68112)(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 - 시멘트, 석회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1), 콘크리트, 레미콘및기타시멘트, 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2), 석면, 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C23994)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 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은 허용함)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제7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300	5층이하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한다.

③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 한다.

제8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색 또는 무채 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제9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주차장) 산업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제11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12조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구분	규 제 내 용
지원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제13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용적률	최고층수	300	5층이하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적용한다.

③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로 한다.

제14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차는 2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②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제16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차장) 지원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제18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9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 3m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 이어야 한다.

3. 2의 규정에 의해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 가로 60cm이내, 세로 200cm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입체형 간판 또는 차양, 현수막을 이용한 간판을 권장한다.

⑤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관련 조례 등에 따른다.

제20조 (가설건축물 및 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21조 (녹지공간 식재계획) ① 완충녹지 및 공원내 산책로 주변으로 계절별 수종을 식재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2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248,498	-	248,498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1) 총괄표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7	2,557 ¹ (2,066)	38,754 ¹ (34,479)	2	1,107 ¹ (616)	17,671 ¹ (13,396)	4	1,330 ¹ (1,330)	20,352 ¹ (20,352)	1	120 ¹ (120)	731 ¹ (731)
중로	기정	5	2,384 ¹ (1,893)	37,791 ¹ (33,516)	2	1,107 ¹ (616)	17,671 ¹ (13,396)	3	1,277 ¹ (1,277)	20,120 ¹ (20,120)	-	-	-
소로	기정	2	173 ¹ (173)	963 ¹ (963)	-	-	-	1	53 ¹ (53)	232 ¹ (232)	1	120 ¹ (120)	731 ¹ (731)

※ ¹()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2)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2	20~26.25	집산 도로	883 ¹ (392)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¹ (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중로	2	50	16~19.25	집산 도로	501 ¹ (501)	산업용지 BL1	완충녹지52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444 ¹ (444)	산업용지 BL1	중로2-50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중로	2	52	15~18.25	집산 도로	332 ¹ (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소로	2	257	8	국지 도로	53 ¹ (53)	중로2-51	산업단지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기정	소로	3	157	6	국지 도로	120 ¹ (120)	중로2-50	유수지⑨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 ¹()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나) 주차장

(1)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8	주차장	사다리 217-1번지	1,000	-	1,00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29	주차장	사다리 산26-10번지	2,070	-	2,07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2) 공간시설

가) 공원

(1)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4	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27-1번지	2,253	-	2,25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가	공원	소공원	사다리 217-1번지	1,690	-	1,690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나) 녹지

(1)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35,571	-	35,571		
기정	4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82-1	15,450	-	15,4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49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4번지	4,963	-	4,6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52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15,158	-	15,158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1)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수도공급설비	사다리 135-2번지	1,824	-	1,824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1)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유수지	저류 시설	사다리 산26-10번 지	5,850	-	5,8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1)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다리 산26-10번 지	1,550	-	1,5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I -1	12,294	12,294	I -1	I -1	1,000	1,000	주차장㉘
-	I -2			I -2	I -2	2,070	2,070	주차장㉙
-	I -3			I -3	I -3	1,550	1,550	폐수종말처리시설㉚
-	I -4			I -4	I -4	5,850	5,850	저류시설㉛
-	I -5			I -5	I -5	1,824	1,824	배수시설㉜
-	II -BL1	158,006	158,006	II -BL1-1	II -BL1-1	11,978	11,978	
				II -BL1-2	II -BL1-2	4,651	4,651	
				II -BL1-3	II -BL1-3	6,204	6,204	
				II -BL1-4	II -BL1-4	16,413	16,413	
				II -BL1-5	II -BL1-5	19,579	19,579	
				-	-	-	-	
				-	-	-	-	
				-	-	-	-	
				II -BL2-1	II -BL2-1	10,311	52,893	
				II -BL2-2	II -BL2-2	9,195	6,556	
				II -BL2-3	II -BL2-3	8,581	2,708	
				II -BL2-4	II -BL2-4	4,369	1,653	
				II -BL2-5	II -BL2-5	3,153	1,653	
				II -BL2-6	II -BL2-6	2,269	2,714	
				II -BL2-7	II -BL2-7	2,336	6,671	
		II -BL2-8	II -BL2-8	3,201	-			
		II -BL2-9	II -BL2-9	4,599	-			
		II -BL2-10	II -BL2-10	7,620	-			
		II -BL2-11	II -BL2-11	8,705	-			
		II -BL2-12	II -BL2-12	10,509	-			
-	II -BL3			II -BL3-1	II -BL3-1	8,840	10,495	
				II -BL3-2	II -BL3-2	1,655	-	
				II -BL4-1	II -BL4-1	2,745	2,512	
-	II -BL4			II -BL4-2	II -BL4-2	2,280	2,647	
				II -BL4-3	II -BL4-3	8,813	8,679	
-	III	4,205	4,205	III	III	4,205	4,205	
-	IV -1-1	39,464	39,464	IV -1-1	IV -1-1	15,523	15,523	완충녹지㉞
-	IV -1-2			IV -1-2	IV -1-2	4,963	4,963	완충녹지㉟
-	IV -1-3			IV -1-3	IV -1-3	15,158	15,158	완충녹지㊱
-	IV -2-1			IV -2-1	IV -2-1	2,253	2,253	공원㊲
-	IV -2-2			IV -2-2	IV -2-2	1,690	1,690	공원㊳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2)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1-1 II-BL1-2 II-BL1-3 II-BL1-4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창고 및 운송관련업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1-5 II-BL2-1 II-BL2-2 II-BL2-11 II-BL2-1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2-3 II-BL2-4 II-BL2-5 II-BL2-6 II-BL2-7 II-BL2-8 II-BL2-9 II-BL2-10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C2331)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C2332) • 석면,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C23994)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3-1 II-BL3-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4-1 II-BL4-2 II-BL4-3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I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 -1 I -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1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업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업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3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부동산업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331)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332) 석면,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C23994)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4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부동산업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 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은 허용함)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Ⅲ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1 I-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 어 내 용	비 고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42호선과 중로 1-43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1-43호선과 중로 2-50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1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소로 3-157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마.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소공원㉔

가) 부지총괄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사다리 산27-1번지	2,253	-	2,253	
기 정	보 행 로		308	-	308	
기 정	운동시설		66	-	66	
기 정	휴양시설		58	-	58	
기 정	녹 지		1,821	-	1,821	

나) 시설총괄표

구분	시 설 명	면 적(m ²)	시설규모(m ²)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253	66	66	
기 정	보 행 로	308	-	-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운동시설	66	66	66	파고라1동
기 정	휴양시설	58	-	-	
기 정	녹 지	1,821	-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다)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2,253	사다리 산27-1번지	66	66	1	
보행로	1	308		-	-	-	
운동시설	2	66		66	66	1	1동
휴양시설	3	58		-	-	-	
녹지	4	1,821		-	-	-	

2) 소공원㉔

가) 부지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사다리 217-1번지	1,690	-	1,690	
기 정	보행로		189	-	189	
기 정	운동시설		106	-	106	
기 정	휴양시설		36	-	36	
기 정	녹지		1,359	-	1,359	

나) 시설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면 적(㎡)	시설규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90	106	106	
기 정	보행로	189	-	-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운동시설	106	106	106	파고라1동
기 정	휴양시설	36	-	-	
기 정	녹지	1,359	-	-	

다)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1,690	사다리 217-1번지	106	106	1	
보행로	1	189		-	-	-	
운동시설	2	106		106	106	1	1동
휴양시설	3	36		-	-	-	
녹지	4	1,359		-	-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06호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대부분 완료되어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목적은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47, FAX: 831-6045)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투자유치산단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대부분완료되어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목적은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잔여 예산 일반회계로 전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17. ~ 2023. 9. 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잔액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22호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3조 까지)

라. 문화도시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60, FAX : 831-6033)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3조 까지)
- 라. 문화도시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마. 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17. ~ 2023. 9. 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 사천문화재단 대표 이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3. 문화·예술·관광·도시·역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
5.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조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시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사업의 위탁·운영) 시장은 문화도시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5. 18., 2022. 1. 18.>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23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1건 입법예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나.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개정사항 반영과 우리 시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실현을 위한 투자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개편하고 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6조)
 - (현행) 최대 100억원 → (개정) 최대 200억원
- 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다.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28조)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㉔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 별도 규정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 별표7)
- 나.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 조정(안 제5조~안 제9조)
 - (현행) 최대 14억원 → (개정) 최대 100억원
- 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설비보조금 신청기한을 착공신고일로부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8조)
- 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11조, 별표 2의3)
 - (현행) 설비투자 최대 100억원 → (개정) 설비투자·부지매입 각 최대 100억원
- 마.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별표 8)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등
- 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사업(기금) 한도액 조정(안 제19조)
 - (현행) 50억원 → (개정) 100억원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6.까지 사천시장(참조 : 투자유치산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 1) 주 소 : (52539)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 2) 전 화 : 055-831-3059 (FAX : 055-831-6045)
 - 3) E- mail : ezday@korea.kr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투자유치산단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지역경제 회복 실현을 위한 투자 유치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개편 하고 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6조)
 - (현행) 최대 100억원 → (개정) 최대 200억원
- 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다.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2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17. ~ 2023. 9. 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4.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문화산업을 말한다.
15.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16.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17.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6호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역을 말한다.
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제3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투자유치촉진지역

제6조제1항 중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최대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매입비 용자지원을 받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1.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u></p> <p>13. <u>“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u></p> <p>14. <u>“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문화산업을 말한다.</u></p> <p>15. <u>“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u></p> <p>16. <u>“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말한다.</u></p> <p>17. <u>“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6호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역을 말한다.</u></p> <p>18. <u>“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u></p>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

----- 200
억원-----.

②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최대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

제2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 지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이중지원 금지) ① -----

.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 산업 특별지원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

.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관 련 법 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30.>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9.1.3, 2021.9.30.>
 - 가. 신설기업: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신설 2021.9.30.>
 - 나. 증설기업: 도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신설 2021.9.30.>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개정 2019.1.3.>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개정 2019.1.3.>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개정 2019.1.3.>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다.<개정 2019.1.3.>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19.1.3.>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1.3.>
8.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9.1.3.>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신설 2019.1.3.>
 -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9.30.>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

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1.3., 2023.3.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3.>

③ 삭제 <2019.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3.>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3., 2023.3.30.>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3., 2023.3.30.>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용만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17.>

제6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30.]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9.1.3., 2023.3.30.>

1.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용자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투자유치산단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지역경제 회복 실현을 위한 투자 유치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개편하고 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 조정(안 제5조~제9조)
 - (현행) 최대 14억원 → (개정) 최대 100억원
-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설비보조금 신청기한을 착공일로부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8조)
- 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11조, 별표 2의3)
 - (현행) 설비투자 최대 100억원→(개정) 설비투자·부지매입 각 100억원
- 라.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별표 8)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등
 - 대규모 투자의 경우 최대 200억원 지원 가능토록 하고 별도기준 마련
 - 고용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가능에 대한 범위 설정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바. 부지매입비 무이자 용자사업(기금)한도액 조정(안 제19조)
(현행) 50억원 → (개정) 100억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17. ~ 2023. 9. 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 한도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조제1항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5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개시일”을 “착공신고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0퍼센트”를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로, “100억원”을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임차계약일로 한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 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부지 매입비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부지 매입비 ×10%	100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별표 7]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단위 : 억원)

구분	지원기준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설비 보조금	이전 보조금	비고
기업 투자 촉진 지구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	3	2	2	2	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15	10	5	10	5	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20	15	7	20	7	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30	20	10	30	10	

※ 지원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름

[별표 8]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20	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2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140	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4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60	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600억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180	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8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6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2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생 략) <u><신 설></u></p>	<p>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7과 같다.</u></p>
<p>제5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u>50퍼센트</u> 범위에서 기업당 <u>5억원</u>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5조(입지보조금) ① ----- ----- ----- <u>70퍼센트</u> ----- ----- <u>20억원</u>-----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u>3억원</u>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6조(고용보조금) ① ----- ----- ----- ----- ----- <u>20억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p>	<p>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 ----- ----- -----</p>

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설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생략)

제9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생략)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 10억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설비보조금) ① -----

----- 10퍼센트 -----
30억원-----.
----- 착공신고일-----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이전보조금) ① -----

----- 10퍼센트 ----- 10억원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생략)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 의3과 같이 하며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⑥ (생략)

<신설>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
의 10퍼센트 -----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
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
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
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
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
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
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임차계약일로 한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

용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용자 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 ⑤ (생략)

-----.

1.·2. (현행과 같음)

3. ----- 100억원-----
-----.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전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바·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100	

개정후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바·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부지 매입비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부지 매입비 ×10%	100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관 련 법 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23.3.30.>

제5조(입지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6조(고용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 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 이전 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도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개정 2021.9.30.>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9.30., 2023.3.30.>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용자 절차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용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2. 용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

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용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일컫는다)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용자를 신청한 시장·군수 및 운용 규정에 따라 기금 용자 업무를 위탁받은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14.>

⑤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34호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주1, 수석3, 대방7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2년 사주1, 수석3, 대방7 지적재조사지구
2. 사업시행자: 사천시장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사주1지구: 30필지, 9,228.7m²
 - 수석3지구: 51필지, 7,775.5m²
 - 대방7지구: 114필지, 31,128.7m²
4. 지적확정조서: 붙임문서 참조
5.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6. 공람장소: 사천시 토지관리과
7. 공람 비치서류: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사천시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055-831-2842, 2843, 2378, 2355)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주1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 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1	사천 읍	사주 리	127 -11	도로	194.0	사천 읍	사주 리	127 -11	도로	179.5	0.0	67.5	국 (건설부)			
			132 -5	도로	53.0											
2	사천 읍	사주 리	130 -1	창고 용지	195.0	사천 읍	사주 리	130 -1	창고 용지	195.0	0.0	0.0	김* 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3	사천 읍	사주 리	130 -7	답	363.0	사천 읍	사주 리	130 -7	답	296.1	0.0	66.9	윤* 순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 ***동 ****호		
4	사천 읍	사주 리	130 -9	도로	427.0	사천 읍	사주 리	130 -9	도로	470.5	0.0	133.5	사천시			
			130 -14	도로	177.0											
5	사천 읍	사주 리	130 -10	답	363.0	사천 읍	사주 리	130 -10	답	363.0	0.0	0.0	김* 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6	사천 읍	사주 리	130 -11	창고 용지	192.0	사천 읍	사주 리	130 -11	창고 용지	192.0	0.0	0.0	김* 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7	사천 읍	사주 리	130 -12	답	231.0	사천 읍	사주 리	130 -12	답	231.0	0.0	0.0	윤* 순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 ***동 ****호		
8	사천 읍	사주 리	130 -13	창고 용지	5.0	사천 읍	사주 리	130 -13	창고 용지	6.7	1.7	0.0	사천시			
9	사천 읍	사주 리	131 -3	창고 용지	760.0	사천 읍	사주 리	131 -3	창고 용지	764.0	4.0	0.0	박* 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 **, ***동 ****호		
10	사천 읍	사주 리	131 -7	도로	133.0	사천 읍	사주 리	131 -7	도로	131.9	0.0	1.1	국 (건설부)			
11	사천 읍	사주 리	131 -9	답	59.0	사천 읍	사주 리	131 -9	답	59.0	0.0	0.0	박* 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 **, ***동 ****호		
12	사천 읍	사주 리	131 -10	답	4.0	-	-	-	-	말소	0.0	4.0	박* 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 **, ***동 ****호		
13	사천 읍	사주 리	131 -11	답	356.0	사천 읍	사주 리	131 -11	답	356.0	0.0	0.0	박* 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 **, ***동 ****호		
14	사천 읍	사주 리	132 -3	대	642.0	사천 읍	사주 리	132 -3	대	642.0	0.0	0.0	허* 진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번길 *		
15	사천 읍	사주 리	132 -8	대	747.0	사천 읍	사주 리	132 -8	대	747.0	0.0	0.0	하* 철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 **, ***동 ****호		
16	사천 읍	사주 리	132 -10	대	375.0	사천 읍	사주 리	132 -10	대	435.5	37.5	0.0	박* 호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 ***동 ****호		
			132 -22	대	23.0											
17	사천 읍	사주 리	132 -20	대	138.0	사천 읍	사주 리	132 -20	대	119.2	0.0	18.8	사천시			
18	사천 읍	사주 리	132 -21	대	21.0	사천 읍	사주 리	132 -21	대	38.6	17.6	0.0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주1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19	사천읍	사주리	133-1	공장용지	74.0	사천읍	사주리	133-1	공장용지	62.2	0.0	11.8	허*진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번길 *	
20	사천읍	사주리	133-2	도로	60.0	사천읍	사주리	133-2	도로	296.1	181.1	0.0	국 (건설부)		
			133-4	도로	55.0										
21	사천읍	사주리	134-4	창고용지	44.0	-	-	-	-	말소	0.0	44.0	변*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22	사천읍	사주리	135-1	공장용지	46.0	사천읍	사주리	135-1	공장용지	46.0	0.0	0.0	허*진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번길 *	
23	사천읍	사주리	135-2	도로	139.0	-	-	-	-	말소	0.0	139.0	변*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24	사천읍	사주리	135-3	대	491.0	사천읍	사주리	135-3	대	535.0	44.0	0.0	변*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25	사천읍	사주리	135-4	대	539.0	사천읍	사주리	135-4	대	519.3	0.0	19.7	변*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26	사천읍	사주리	135-5	대	1,166.0	사천읍	사주리	135-5	대	1,263.5	97.5	0.0	해*** **회사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27	사천읍	사주리	135-9	대	470.0	사천읍	사주리	135-9	대	552.1	82.1	0.0	변*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28	사천읍	사주리	135-10	도로	31.0	-	-	-	-	말소	0.0	31.0	변*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29	사천읍	사주리	136-3	도로	149.0	사천읍	사주리	136-3	도로	176.6	27.6	0.0	국 (건설부)		
30	사천읍	사주리	136-4	전	155.0	사천읍	사주리	136-4	전	106.1	0.0	48.9	국(기획재정부)		
31	사천읍	사주리	136-5	도로	9.0	사천읍	사주리	136-5	도로	9.6	0.6	0.0	국 (건설부)		
32	사천읍	사주리	136-6	전	14.0	-	-	-	-	말소	0.0	14.0	사천시		
33	사천읍	사주리	137-8	대	286.0	사천읍	사주리	137-8	대	286.0	0.0	0.0	김*민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리 **, ***동 ****호	
34	사천읍	사주리	137-31	대	55.0	사천읍	사주리	137-31	대	63.8	8.8	0.0	사천시		
35	사천읍	사주리	471-4	도로	207.0	사천읍	사주리	471-4	도로	85.4	0.0	121.6	국 (건설부)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수석3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 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1	사천 읍	수석 리	156 -6	대	27.0	사천 읍	수석 리	156 -6	대	60.8	0.0	64.2	국(기획 재정부)			
			156 -7	대	46.0											
			156 -8	대	11.0											
			156 -9	대	40.0											
			156 -26	대	1.0											
2	사천 읍	수석 리	156 -10	대	10.0	사천 읍	수석 리	156 -10	대	15.1	5.1	0.0	국(기획 재정부)			
3	사천 읍	수석 리	156 -31	도로	172.0	사천 읍	수석 리	156 -31	도로	158.2	0.0	13.8	사천시			
4	사천 읍	수석 리	157 -3	대	33.0	사천 읍	수석 리	157 -3	대	36.8	3.8	0.0	김*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1길 ***		
5	사천 읍	수석 리	157 -4	대	155.0	사천 읍	수석 리	157 -4	대	155.0	0.0	0.0	김*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1길 ***		
6	사천 읍	수석 리	157 -5	대	202.0	사천 읍	수석 리	157 -5	대	202.0	0.0	0.0	허*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운동장길 ***, ***동 ***호		
7	사천 읍	수석 리	157 -6	대	31.0	사천 읍	수석 리	157 -6	대	2.1	0.0	28.9	사천시			
8	사천 읍	수석 리	157 -8	도로	73.0	사천 읍	수석 리	157 -8	도로	167.5	94.5	0.0	사천시			
9	사천 읍	수석 리	157 -11	대	48.0	사천 읍	수석 리	157 -11	대	67.6	0.0	13.4	김*수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 ***동 ***호		
			197 -1	대	33.0											
10	사천 읍	수석 리	157 -12	대	69.0	사천 읍	수석 리	157 -12	대	77.3	8.3	0.0	이*자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길 ***		
11	사천 읍	수석 리	157 -13	대	76.0	사천 읍	수석 리	157 -13	대	90.6	14.6	0.0	서*남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길 **		
12	사천 읍	수석 리	157 -14	대	181.0	사천 읍	수석 리	157 -14	대	167.0	0.0	14.0	사천시			
13	사천 읍	수석 리	157 -16	대	96.0	사천 읍	수석 리	157 -16	대	100.1	4.1	0.0	안*자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1길 ***		
14	사천 읍	수석 리	157 -17	대	26.0	사천 읍	수석 리	157 -17	대	79.0	0.0	3.0	박*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길 ***		
			157 -18	대	56.0											
15	사천 읍	수석 리	157 -19	대	148.0	사천 읍	수석 리	157 -19	대	159.2	11.2	0.0	김*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번길 *, ***호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수석3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6	사천읍	수석리	157-21	대	53.0	사천읍	수석리	157-21	대	124.3	0.0	9.7	김*리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동 ***호	
			157-22	대	40.0										
			157-30	대	41.0										
17	사천읍	수석리	157-23	대	129.0	사천읍	수석리	157-23	대	118.2	0.0	10.8	최*욱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길 **~**	
18	사천읍	수석리	157-25	대	45.0	사천읍	수석리	157-25	대	108.1	14.1	0.0	정*환	경상남도 창원시 상산구 동산로 ***, ***동 ****호	
			157-26	대	49.0										
19	사천읍	수석리	157-28	대	40.0	사천읍	수석리	157-28	대	40.0	0.0	0.0	한*순	경상남도 사천시 수석리 ***	
20	사천읍	수석리	157-29	대	126.0	사천읍	수석리	157-29	대	127.8	1.8	0.0	박*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동성길 **~*	
21	사천읍	수석리	157-35	도로	113.0	사천읍	수석리	157-35	도로	120.0	7.0	0.0	사천시		
22	사천읍	수석리	157-41	대	203.0	사천읍	수석리	157-41	대	154.0	0.0	49.0	경상남도(교육감)		
23	사천읍	수석리	157-44	도로	289.0	사천읍	수석리	157-44	도로	396.6	107.6	0.0	사천시		
24	사천읍	수석리	158-5	대	50.0	사천읍	수석리	158-5	대	50.0	0.0	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25	사천읍	수석리	158-7	도로	46.0	사천읍	수석리	158-7	도로	75.9	29.9	0.0	국(건설부)		
26	사천읍	수석리	193-18	종교용지	8.0	-	-	-	-	말소	0.0	8.0	안*순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번길 **, *동 ***호	
27	사천읍	수석리	193-19	도로	34.0	사천읍	수석리	193-19	도로	27.6	0.0	6.4	사천시		
28	사천읍	수석리	194-1	대	142.0	사천읍	수석리	194-1	대	284.4	7.4	0.0	성*례	경기도 김포시 증봉로 **~, ***동 ****호	
			195-3	대	135.0										
29	사천읍	수석리	194-4	대	390.0	사천읍	수석리	194-4	대	381.5	0.0	8.5	대표미지정(2명)		
30	사천읍	수석리	194-12	대	165.0	사천읍	수석리	194-12	대	135.8	0.0	29.2	이*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 ***동 ***호	
31	사천읍	수석리	194-18	대	93.0	사천읍	수석리	194-18	대	93.0	0.0	0.0	윤*자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길 **	
32	사천읍	수석리	194-19	도로	50.0	사천읍	수석리	194-19	도로	46.7	0.0	3.3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수석3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감소(㎡)	성명	주소	
33	사천읍	수석리	195-1	대	1,699.0	사천읍	수석리	195-1	대	1,707.5	8.5	0.0	대표 미지정 (2명)		
34	사천읍	수석리	195-2	도로	17.0	사천읍	수석리	195-2	도로	17.0	0.0	0.0	사천시		
35	사천읍	수석리	195-6	대	39.0	사천읍	수석리	195-6	대	39.0	0.0	0.0	성*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동성길 **	
36	사천읍	수석리	196-1	대	175.0	사천읍	수석리	196-1	대	173.0	0.0	2.0	최*창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길 ***	
37	사천읍	수석리	196-2	대	185.0	사천읍	수석리	196-2	대	185.0	0.0	0.0	강*여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길 **, ***동 ***호	
38	사천읍	수석리	196-3	대	93.0	사천읍	수석리	196-3	대	101.9	8.9	0.0	조*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길 ***	
39	사천읍	수석리	196-4	대	93.0	사천읍	수석리	196-4	대	63.5	0.0	29.5	조*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길 ***	
40	사천읍	수석리	196-5	대	195.0	사천읍	수석리	196-5	대	195.0	0.0	0.0	김*철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 **, ***동 ***호	
41	사천읍	수석리	196-6	대	109.0	사천읍	수석리	196-6	대	112.3	3.3	0.0	박*문	경상남도 사천시 수석리 ***	
42	사천읍	수석리	196-7	대	212.0	사천읍	수석리	196-7 196-12	대 대	70.7 30.0	0.0	111.3	이*자 (외 2명)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길 ***	
43	사천읍	수석리	196-8	대	219.0	사천읍	수석리	196-8	대	196.0	0.0	23.0	안*순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번길 **, *동 ***호	
44	사천읍	수석리	196-10	대	294.0	사천읍	수석리	196-10	대	305.0	11.0	0.0	이*규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번길 **, *동 ***호	
45	사천읍	수석리	196-11	대	112.0	사천읍	수석리	196-11	대	104.6	0.0	7.4	성*례	경기도 김포시 증봉로 *-*, ***동 ****호	
46	사천읍	수석리	197-2	대	13.0	사천읍	수석리	197-2	대	13.0	0.0	0.0	국(기획재정부)		
47	사천읍	수석리	197-3	대	113.0	사천읍	수석리	197-3	대	135.9	22.9	0.0	조*영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 길 **	
48	사천읍	수석리	197-7	대	120.0	사천읍	수석리	197-7	대	130.0	10.0	0.0	이*도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 길 **	
49	사천읍	수석리	197-28	대	1.0	사천읍	수석리	197-28	대	1.0	0.0	0.0	국(기획재정부)		
50	사천읍	수석리	197-29	도로	56.0	사천읍	수석리	197-29	도로	47.2	0.0	8.8	사천시		
51	사천읍	수석리	761-43	도로	317.0	사천읍	수석리	761-43	도로	325.7	8.7	0.0	국 (건설부)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대방7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 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1	-	대방동	98-3	도로	766.0	-	대방동	98-3	도로	633.2	0.0	132.8	사천시		
2	-	대방동	205-29	도로	475.0	-	대방동	205-29	도로	495.7	20.7	0.0	사천시		
3	-	대방동	210-1	답	114.0	-	대방동	210-1	답	100.7	0.0	13.3	사천시		
4	-	대방동	211-1	도로	94.0	-	대방동	211-1	도로	103.0	9.0	0.0	사천시		
5	-	대방동	360-1	대	23.0	-	대방동	360-1	대	66.7	43.7	0.0	사천시		
6	-	대방동	360-5	전	104.0	-	대방동	360-5	전	111.2	7.2	0.0	사천시		
7	-	대방동	360-6	도로	15.0	-	대방동	360-6	도로	31.9	16.9	0.0	사천시		
8	-	대방동	360-7	전	231.0	-	대방동	360-7	전	231.0	0.0	0.0	김*순	사천시 나무전길 ** (동금동)	
9	-	대방동	360-18	도로	57.0	-	대방동	360-18	도로	52.3	0.0	4.7	사천시		
10	-	대방동	361-1	대	129.0	-	대방동	361-1	대	132.0	3.0	0.0	사천시		
11	-	대방동	362	대	119.0	-	대방동	362	대	145.5	26.5	0.0	사천시		
12	-	대방동	363	대	2,111.0	-	대방동	363	대	2,111.0	0.0	0.0	김*경 (외42명)	사천시 각산로 *** ***호	
13	-	대방동	363-3	도로	894.0	-	대방동	363-3	도로	931.5	23.5	0.0	사천시		
			367-1	도로	14.0										
14	-	대방동	364	답	140.0	-	대방동	364	답	140.0	0.0	0.0	곽*환 (외39명)	사천시 상동림*길 *	
15	-	대방동	365-2	답	297.0	-	대방동	365-2	답	309.8	12.8	0.0	심*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온천천남로 *** **동 ***호	
16	-	대방동	366	답	48.0	-	대방동	366	답	48.0	0.0	0.0	대표 미지정 (2명)		
17	-	대방동	366-3	도로	263.0	-	대방동	366-3	도로	264.9	1.9	0.0	국(건설부)		
18	-	대방동	367	대	493.0	-	대방동	367	대	493.0	0.0	0.0	대표미지정 (2명)		
19	-	대방동	368-4	도로	18.0	-	대방동	368-4	도로	18.0	0.0	0.0	손*수	김해시 경원로**번길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대방7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 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20	-	대방동	368-5	대	196.0	-	대방동	368-5	대	196.0	0.0	0.0	장*선	사천시 각산로 ****-**	
21	-	대방동	368-6	대	212.0	-	대방동	368-6	대	187.4	0.0	24.6	정*찬	사천시 대방동 ****-*	
22	-	대방동	424-2	전	265.0	-	대방동	424-2	전	265.0	0.0	0.0	대표 미지정 (2명)		
23	-	대방동	425	대	75.0	-	대방동	425	대	75.0	0.0	0.0	고*용		
24	-	대방동	425-1	도로	50.0	-	대방동	425-1	도로	49.4	0.0	0.6	사천시		
25	-	대방동	426	대	73.0	-	대방동	426	대	73.1	0.1	0.0	김*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번길 *	
26	-	대방동	427	대	43.0	-	대방동	427	대	43.0	0.0	0.0	김*성		
27	-	대방동	428	대	595.0	-	대방동	428	대	595.0	0.0	0.0	김*규	***	
28	-	대방동	429	대	66.0	-	대방동	429	대	81.6	15.6	0.0	김*악	사천시 각산로 ****-**	
29	-	대방동	430	대	313.0	-	대방동	430	대	288.5	0.0	24.5	배*달	사천시 각산로 ****-**	
30	-	대방동	430-1	대	252.0	-	대방동	430-1	대	245.0	0.0	7.0	옥*규	사천시 각산로 ****-**	
31	-	대방동	431	대	245.0	-	대방동	431	대	240.7	0.0	4.3	박*식	***	
32	-	대방동	432	전	1,027.0	-	대방동	432	전	665.2	0.0	0.0	송*갑	사천시 각산로 ****-**	
								432-5	전	361.8					
33	-	대방동	432-1	전	235.0	-	대방동	432-1	전	224.6	0.0	10.4	임*만	사천시 벌리*길 **	
34	-	대방동	432-3	도로	22.0	-	대방동	432-3	도로	67.8	45.8	0.0	국(건설부)		
35	-	대방동	433	도로	282.0	-	대방동	433	도로	229.0	0.0	53.0	국(건설부)		
36	-	대방동	434-7	도로	74.0	-	대방동	434-7	도로	74.0	0.0	0.0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대방7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 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감소 (㎡)	성명	주소	
37	-	대방동	440-2	도로	1,767.0	-	대방동	440-2	도로	1,619.5	0.0	147.5	사천시		
38	-	대방동	443	대	319.0	-	대방동	443	대	319.0	0.0	0.0	권*웅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 ***동 ***호	
39	-	대방동	443-3	전	90.0	-	대방동	443-3	전	42.6	0.0	47.4	권*웅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 ***동 ***호	
40	-	대방동	443-4	도로	11.0	-	대방동	443-4	도로	11.0	0.0	0.0	권*웅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 ***동 ***호	
41	-	대방동	444	대	100.0	-	대방동	444	대	100.0	0.0	0.0	최*춘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번길 ***호	
42	-	대방동	444-2	대	492.0	-	대방동	444-2	대	451.2	0.0	40.8	김*환	사천시 각산로 ***호	
43	-	대방동	444-3	대	37.0	-	대방동	447	대	205.7	62.7	0.0	강*순	사천시 각산로 ***호	
			447	대	106.0										
44	-	대방동	445	전	393.0	-	대방동	445	전	714.8	0.0	131.2	김*규	사천시 대방*길 **	
			446-1	전	165.0										
			446-3	전	288.0										
45	-	대방동	446-2	전	63.0	-	-	-	말소	0.0	63.0	강*순	사천시 각산로 ***호		
46	-	대방동	448-1	대	258.0	-	대방동	448-1	대	258.0	0.0	0.0	정*수	사천시 심포*길 ***호	
47	-	대방동	448-2	전	181.0	-	대방동	448-2	전	181.0	0.0	0.0	탁*수	사천시 각산로 ***호	
48	-	대방동	448-5	대	92.0	-	대방동	448-5	대	100.8	8.8	0.0	이*연	사천시 서동길 ** 나동 ***호	
49	-	대방동	448-6	대	12.0	-	대방동	448-6	대	12.0	0.0	0.0	정*수	사천시 심포*길 ***호	
50	-	대방동	449-1	대	266.0	-	대방동	449-1	대	254.8	0.0	11.2	박*향	사천시 숲미길 ***호	
51	-	대방동	449-2	대	218.0	-	대방동	449-2	대	243.2	25.2	0.0	김*홍	사천시 각산로 ***호	
52	-	대방동	449-3	도로	13.0	-	대방동	451-2	도로	206.9	54.9	0.0	사천시		
			450-2	도로	7.0										
			451-2	도로	132.0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대방7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 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감소 (㎡)	성명	주소		
53	-	대방동	449-4	대	193.0	-	대방동	449-4	대	184.6	0.0	8.4	김*우	사천시 벌리*길 * ***호		
54	-	대방동	449-5	대	169.0	-	대방동	449-5	대	140.8	0.0	28.2	김*홍	사천시 각산로 ***-**		
55	-	대방동	450-1	대	219.0	-	대방동	450-1	대	276.8	10.8	0.0	김*악	사천시 각산로 ***-**		
			451-6	대	47.0											
56	-	대방동	451-1	전	756.0	-	대방동	451-1	전	777.0	21.0	0.0	김*완	사천시 각산로 ***-**		
57	-	대방동	451-3	전	830.0	-	대방동	451-3	전	830.0	0.0	0.0	김*영	통영시 북문*길 ** ***호		
58	-	대방동	451-4	대	132.0	-	대방동	451-4	대	158.6	6.6	0.0	이*우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번길 ***-**		
			451-8	대	20.0											
59	-	대방동	451-5	대	181.0	-	대방동	451-5	대	213.3	32.3	0.0	강*순	사천시 각산로 ***-**		
60	-	대방동	451-7	대	7.0	-	-	-	-	말소	0.0	7.0	김*완	사천시 각산로 ***-**		
61	-	대방동	452-1	전	213.0	-	대방동	452-1	전	213.0	0.0	0.0	송*갑	사천시 각산로 ***-**		
62	-	대방동	452-2	대	212.0	-	대방동	452-2	대	237.2	25.2	0.0	구*남	사천시 벌리*길 ** ***호		
63	-	대방동	452-3	전	188.0	-	대방동	452-3	전	201.2	13.2	0.0	구*남	사천시 벌리*길 ** ***호		
64	-	대방동	452-4	전	101.0	-	대방동	452-4	전	101.0	0.0	0.0	송*갑	사천시 각산로 ***-**		
65	-	대방동	453	대	377.0	-	대방동	453	대	377.0	0.0	0.0	송*갑	사천시 각산로 ***-**		
66	-	대방동	454	대	169.0	-	대방동	454	대	149.4	0.0	19.6	황*용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 ****호		
67	-	대방동	455	대	188.0	-	대방동	455	대	178.8	0.0	9.2	김*주	사천시 각산로 ***-**		
68	-	대방동	456	대	152.0	-	대방동	456	대	94.6	0.0	57.4	김*주	사천시 각산로 ***-**		
69	-	대방동	457	대	294.0	-	대방동	457	대	256.2	0.0	37.8	최*근	사천시 각산로 ***-**		
70	-	대방동	458	대	192.0	-	대방동	458	대	192.0	0.0	0.0	김*천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대방7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 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감소 (㎡)	성명	주소	
71	-	대방동	459	대	83.0	-	대방동	459	대	89.9	6.9	0.0	김*동 (외 1명)	사천시 각산로 ***-**	
72	-	대방동	460	대	486.0	-	대방동	460	대	527.8	41.8	0.0	김*주	사천시 신행로 ** ***동 **** 호	
73	-	대방동	461	전	291.0	-	대방동	461	전	150.3	0.0	140.7	김*주	사천시 신행로 ** ***동 **** 호	
74	-	대방동	462 -1	대	139.0	-	대방동	462 -1	대	139.0	0.0	0.0	최*수	***	
75	-	대방동	462 -2	대	129.0	-	대방동	462 -2	대	146.1	17.1	0.0	박*재	사천시 각산로 ***-**	
76	-	대방동	462 -3	전	321.0	-	대방동	462 -3	전	378.7	0.0	64.3	김*주	사천시 신행로 ** ***동 ****호	
			466	전	122.0										
77	-	대방동	462 -4	대	145.0	-	대방동	462 -4	대	151.5	6.5	0.0	김*업	사천시 각산로 ***-**	
78	-	대방동	462 -5	대	27.0	-	대방동	462 -5	대	25.6	0.0	1.4	김*업	사천시 각산로 ***-**	
79	-	대방동	463	대	109.0	-	대방동	463	대	109.0	0.0	0.0	김*환	***	
80	-	대방동	463 -1	대	126.0	-	대방동	463 -1	대	126.0	0.0	0.0	김*환	***	
81	-	대방동	464	대	155.0	-	대방동	464	대	196.0	41.0	0.0	박*심	진주시 진주대***번길 ** ***동 ****호	
82	-	대방동	464 -1	대	176.0	-	대방동	464 -1	대	149.3	0.0	12.5	사천시		
								464 -2	대	14.2					
83	-	대방동	465	대	255.0	-	대방동	465	대	222.3	23.0	0.0	이*자	사천시 동급*길 ***-*	
								465 -4	대	55.7					
84	-	대방동	465 -1	대	83.0	-	-	-	-	말소	0.0	83.0	김*주	사천시 청널길 **	
85	-	대방동	465 -2	대	62.0	-	-	-	-	말소	0.0	62.0	김*주	사천시 청널길 **	
86	-	대방동	468 -1	전	52.0	-	대방동	468 -1	전	64.2	12.2	0.0	사천시		
87	-	대방동	468 -2	도로	202.0	-	대방동	468 -2	도로	202.0	0.0	0.0	대표 미지정 (3명)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대방7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감소(㎡)	성명	주소	
88	-	대방동	468-3	대	181.0	-	대방동	468-3	대	179.3	0.0	1.7	박*비	사천시 각산로 ***	
89	-	대방동	468-4	대	249.0	-	대방동	468-4	대	252.4	3.4	0.0	김*근	사천시 숲외길 ** ***동 ***호	
90	-	대방동	468-5	전	108.0	-	대방동	468-5	전	108.0	0.0	0.0	박*호	사천시 동금*길 ***-***호	
91	-	대방동	468-6	대	10.0	-	대방동	468-6	대	6.9	0.0	3.1	사천시		
92	-	대방동	468-8	도로	818.0	-	대방동	468-8	도로	835.1	17.1	0.0	사천시		
93	-	대방동	468-19	전	40.0	-	대방동	468-19	전	53.3	13.3	0.0	설*우	사천시 대방길 *** ***동 ***호	
94	-	대방동	468-20	대	61.0	-	대방동	468-20	대	67.7	6.7	0.0	사천시		
95	-	대방동	468-21	전	79.0	-	대방동	468-21	전	68.0	0.0	11.0	사천시		
96	-	대방동	468-22	대	60.0	-	대방동	468-22	대	49.7	0.0	10.3	사천시		
97	-	대방동	468-23	대	273.0	-	대방동	468-23	대	234.1	0.0	38.9	사천시		
98	-	대방동	468-24	전	122.0	-	대방동	468-24	전	119.2	0.0	2.8	사천시		
99	-	대방동	468-25	전	43.0	-	대방동	468-25	전	55.6	12.6	0.0	사천시		
100	-	대방동	469-1	대	178.0	-	대방동	469-1	대	178.0	0.0	0.0	설*우	사천시 대방길 *** ***동 ***호	
101	-	대방동	469-3	대	11.0	-	대방동	469-3	대	71.1	60.1	0.0	사천시		
102	-	대방동	469-8	대	178.0	-	대방동	469-8	대	149.6	0.0	28.4	사천시		
103	-	대방동	469-9	도로	355.0	-	대방동	469-9	도로	278.0	0.0	77.0	사천시		
104	-	대방동	470-1	대	428.0	-	대방동	470-1	대	389.4	0.0	0.0	유*림	사천시 향촌*길 **	
								470-4	대	38.6					
105	-	대방동	470-2	도로	83.0	-	대방동	470-2	도로	83.0	0.0	0.0	김*천		
106	-	대방동	470-3	전	154.0	-	대방동	470-3	전	154.0	0.0	0.0	유*림	사천시 향촌*길 **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대방7 지적재조사지구 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107	-	대방동	471	전	311.0	-	대방동	471	전	311.0	0.0	0.0	천*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 ***동 ****호	
108	-	대방동	472 -1	전	313.0	-	대방동	472 -1	전	313.0	0.0	0.0	한*진	사천시 수남길 **	
109	-	대방동	472 -4	전	14.0	-	대방동	472 -4	전	15.9	1.9	0.0	사천시		
110	-	대방동	474	전	154.0	-	대방동	474	전	157.6	3.6	0.0	김*규	사천시 대방*길 **	
111	-	대방동	475 -1	도로	2,725.0	-	대방동	475 -1	도로	2,456.5	0.0	268.5	국(건설부)		
112	-	대방동	753 -3	도로	92.0	-	대방동	753 -3	도로	67.6	0.0	24.4	국(건설부)		
113	-	대방동	754 -4	구거	802.0	-	대방동	754 -4	구거	693.2	0.0	108.8	국(건설부)		
114	-	대방동	755 -36	도로	738.0	-	대방동	755 -36	도로	1,311.8	573. 8	0.0	국(건설부)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37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8. 17.

사 천 시 장

1. 공고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연번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등록원부상 주소	등기번호 (배송지)	비고
1	경남04보4570	원*현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43, ***동 ***호	1094854226674 (사천시 시청로 77 건설과)	기타
2	경남04모4634	강*현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43, ***동 ***호	1094854226675 (사천시 시청로 77 건설과)	기타
3	경남04너4748	주식회사 홍*건설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97, *층	1094854226676 (사천시 시청로 77 건설과)	수취인불명
4	경남02로3276	주식회사 사천*렌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4길 62, ***호	1094854229642 (사천시 시청로 77 건설과)	폐문부재
5	경남02-2363	조*홍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웅동길 240-**	1094854230274 (사천시 시청로 77 건설과)	기타
6	경남04보4330	주식회사 영*테크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546-**	1094854231757 (사천시 시청로 77 건설과)	폐문부재
7	경남04도3088	초*골영농조 합법인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초량길 27-*	1094854234106 (사천시 시청로 77 건설과)	폐문부재

사 천 시 공 보

제849호

3. 공고기간: 2023. 8. 17. ~ 2023. 8. 31.(14일간)

4. 공고방법: 사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문의처: 사천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건설기계 담당(전화: 055-831-3261)

6.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건설기계소유자께서는 경남건설기계검사소(전화: 055-586-5622)로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만료일 후 30일 이내: 10만원 / 만료일 후 30일 초과: 3일마다 10만원 가산)됩니다.

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